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은행 예산 중 기재부 사전승인 대상인
급여성 경비의 범위 축소〉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8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은행 확정 예산의 국회 상임위 보고 (안 제98조제1항 단서 신설) ..	2
2. 한국은행 예산 중 기획재정부장관 사전승인 대상인 급여성 경비의 범위 축소 (안 제98조제2항)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11.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임금을 상승시킨 편법에 대한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Ⅲ. 검토의견

1. 한국은행 확정 예산의 국회 상임위 보고 (안 제98조제1항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국은행 예산 확정 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현재 한국은행의 예산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확정됨. ① 급여성 경비 등에 대하여 금통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②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한국은행 총재가 전체 예산을 편성, ③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급여성 경비를 포함한 전체예산에 대하여 금통위가 심의·의결.¹⁾

1) 「한국은행법」 제98조(예산·결산)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행의 예산은 급여성 경비 등²⁾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 외에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 의결로 확정되며 그 외에는 외부의 견제 장치가 없음.

그런데 한국은행은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복지수준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어 외부 견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한국은행 예산 관련 국회 및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

구분	지적 경로	지적사항
국회	2021년 국정감사	○ 기재부는 한국은행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승인 시 사내대출 등 통제되지 않은 자체적인 복지후생까지 점검 필요 ○ 한국은행의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하여 기재부가 지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료(보육수당), 가족 의료비, 육아휴직급여 등을 계속 지원(2017년부터 작년까지 111억원 상당)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2020년 국정감사	○ 임직원 대출을 투기과열지구 LTV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므로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 ○ 제도상 폐지된 퇴직가산금을 유지하고 있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수도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등 임직원 복지수준이 과도하고 인력 관리에 있어서도 지원인력이 과다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
	2019년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사망 직원에 대한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제도 운영, 과도한 유급휴가제도 시정 필요

2)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 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3) 2022년 감사원 감사가 지적하고 있는 ‘방만한 복리후생 지적사항 미이행 주요 사례’

구분	지적 경로	지적사항
감사원	2022년 한국은행 및 산·기은 조·예산 운영실태 감사	○ 한국은행 총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을 감안하여 퇴직 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총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를 폐지하고 과도한 유급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³⁾
	2018년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	○ 한국은행 총재는 ①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및 공무원, 국책은행의 퇴직금 가산지급 현황을 감안하여 업무상 재해 외의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가산지급하지 않도록 퇴직금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등 「퇴직급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근로기준법」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최대 25일의 연차휴가일수만 부여하도록 「복지규정」 부칙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③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감안하여 과도한 유급휴가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감안하여 과도한 복리후생은 감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내역과 달리 연차휴가보상비와 평가상여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급여성 경비 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이 반복됨에 따라 한국은행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확정된 한국은행 예산의

-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양육수당 및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원 항목으로 각각 22억여 원 및 8억여 원 지급
- (직원의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등에 따르면 직원 외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억여 원 지급
-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업무와 무관한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선택적 복지에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4억여 원 지급
-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단체보험 가입) 직원의 단체보험은 선택적 복지에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5억여 원 지급

국회 제출'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의 범위를 현재의 '급여성 경비 등'에서 '금통위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내용(관련 검토 후술)을 함께 담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면 동 규정은 최소한의 외부 견제 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님.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산의 국회 보고가 견제 장치로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임. 개정안에 따라 한국은행에 새롭게 부과될 의무는 확정된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 그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수정할 수 없음. 즉, 예산의 국회 보고는 사실 행위에 불과하여 한국은행 예산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둘째, 중앙은행의 예산이 국회 사전 제출을 통해 공개될 경우 통화 신용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한국은행 예산의 범위는 ①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 퇴직급여, 화폐제조비 및 출연금, ②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취득금액으로 되어 있음.⁴⁾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급여성 경비뿐만이 아니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전체 예산'을 국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규모가 사전에 노출되고 시장이 이에 반응함에 따라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4) 한국은행 회계규정 제52조의2.

2. 한국은행 예산 중 기획재정부장관 사전승인 대상인 급여성 경비의 범위 축소 (안 제9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한국은행 예산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 - 모든 급여성 경비	○ 한국은행 예산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예산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의 범위를 현행 ‘모든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자 함. 이는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이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에 따라 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인 ‘급여성 경비 등’이란 한국은행의 예산 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함.

예산 절차에 관한 「한국은행법」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0년 제정법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금통위가 온전히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1962년 개정⁵⁾에서 각의(閣議)의 의결 절차를 추가하여 자율성을 축소시켰음. 이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은행이 제외됨⁶⁾에 따라 1982년 개정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5)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된 것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명칭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변경, 한국은행의 외환정책과 외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 대부분 삭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신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정부 추천위원 비율 확대,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사권 신설 등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주요 내용이었음.

6)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1963년 제정당시부터 ‘정부투자기관’에 ‘한국은행’을 포함하고 있

가 한국은행의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서만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1997년 개정⁷⁾에서 ‘경비예산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사전 승인’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후 2003년 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을 ‘경비예산 전체’에서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축소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한국은행의 예산·결산 제도 변천]

제개정	예산 결산 제도 내용
1950년 제정	○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산/결산 승인
1962년 개정	○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각의(閣議)의 의결을 얻어 예산/결산 승인
1963년 개정	○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 승인
1982년 개정	○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예산/결산 승인, 결산서 정부 제출
1997년 개정	○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산/결산 확정 - 경비예산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사전 승인 - 총재는 결산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
2003년 개정	○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산/결산 확정 - 급여성 경비예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전 승인 - 총재는 결산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
2011년 개정	○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산/결산 승인 - 급여성 경비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 승인 - 총재는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012년 개정	○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산/결산 승인 - 급여성 경비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총재는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었으나, 1981년 개정에서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금융기관 자율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하였음.

7) 6차 개정은 한국은행의 중립성 조항 신설, 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 환원, 금통위에서 재정경제원장관 참여 배제 및 한국은행총재의 의장역할 부여, 금통위 정원 및 정부추천위원수 축소,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 업무감사 및 감사원 회계감사의 감사원감사로 일원화 등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중앙은행이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법에 규정된 대로 독자적으로 통화신용의 운영원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⁸⁾ 중앙은행의 독립성 수준을 지수로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Bade & Parkin⁹⁾은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정적 독립은 중앙은행의 예산에 관한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학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주요국 중앙은행의 예산 절차]

국가	예산 절차
미국	○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예산은 각 지역 연준 경영·예산위원회의 승인과 본부 심사 등을 거친 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의결로 확정 ○ 기타 예산(본부, 감사실, 화폐)은 본부 심사 등을 거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의결로 확정
영국	○ 영란은행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Court of Directors)의 심의·의결로 확정
유럽	○ 예산담당부서인 예산통제조정국의 심사와 예산위원회(ECB 및 회원국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유럽 중앙은행 최고 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의 의결로 확정
일본	○ 일본은행 최고 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Policy Board)가 의결, 이 중 경비예산은 일본 재무대신(정부)의 인가를 받아 결정 - 재무대신이 경비예산에 대한 인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일본은행에 통지하고, 경비예산의 상세내역과 거부이유를 공표하여야 함

이를 바탕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예산제도를 살펴보면, 예산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승

8) 이방식, ‘중앙은행제도론’, 법문사, 1994

9) R. Bade, Parkin M., “Central Bank Laws and Monetary Policy”,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1988

인거부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또한 한국은행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가 사실상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예컨대,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내에서 공공정책국이나 예산실이 아닌 한국은행법을 관장하고 한국은행 업무와 직·간접적 연결이 있는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가 한국은행 예산을 승인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의심 제기가 가능하므로, 소관을 조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며,¹⁰⁾ 2003년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당시 국회재정위원장의 회고성 글에서 재정경제부의 한은 예산 승인권을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표현한 바 있음.¹¹⁾

한편 정부의 급여 통제로 인해 한국은행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도 있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의 유능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고 직원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인센티브, 각종 복지 등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¹²⁾

10)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21

11) 나오연, “독립성과 기능을 높인 제7차 한은법 개정”, (월간)헌정(憲政) 통권 334호, 대한민국헌정회, 2010

1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22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행의 임금상승률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평균의 임금상승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왔음¹³⁾. 또한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2030 세대의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¹⁴⁾

[한국은행, 정부 및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임금상승률]

(단위: %, 전년비)

구분	'20	'21	'22	'23	'24
공무원	2.8	0.9	1.4	1.7	2.5
공공기관	2.8	0.9	1.4	1.7	2.5
고임금기관*	1.8	0.4	0.9	1.2	2.5
한국은행	1.8	0.4	0.9	1.2	2.5

* 산업 평균임금 대비 110% 이상 & 공공기관 평균임금 대비 120% 이상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급여성 경비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은 우수한 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국은행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사전 통제 장치인 급여성 경비에 대한 심

13)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에 대한 급여성 경비 심사 시 산업은행 등 유사 공공기관의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데, 참고대상인 기관들이 고(高)임금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한국은행의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동일하게 2.5%로 반영하였음

14) 김혜선, “연봉 겨우 이 정도?...‘신의직장’ 한국은행도 떠나는 청년들”, 이데일리, 2023.9.5.

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9조¹⁵⁾에 따라 결산상 순이익금 중 일부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결산상 순이익금을 감소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할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00조¹⁶⁾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기능수행에 따른 경비의 최종 책임자로 정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주요국에서도 중앙은행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15)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6) 「한국은행법」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주요국의 중앙은행 견제 장치]

국가	견제장치
미국	○ 12개 연준은행 예산을 연준이사회가 매년 하원의장에게 제출 (Federal Reserve Act 섹션10) ○ 연준이사회 위원은 상원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동법 섹션4) ○ 연준이사회는 연준은행 및 각 회원은행의 계정, 장부 및 업무를 검사하고 진술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연준은행은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동법 섹션11)
영국	○ 중앙은행 이사회(court of directors)에 연간 예산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 부여, 이사회 구성원은 국왕이 임명하고, 의장 및 부의장은 재무장관이 임명(Bank of England Act, 1.Court of directors (2)) ○ 재무부는 회계보고서(a state of accounts)에 포함되어야할 정보·작성방식·원칙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중앙은행은 이를 준수해야함(동법 7.Accounts 4(A))
캐나다	○ 재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 실시(Bank of Canada Act 28(1)) ○ 재무부장관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감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연장, 공익상 필요한 경우 다른 검사를 지시할 수 있음(동법 28(5))
일본	○ 경비예산은 재무장관의 사전승인 필요(일본은행법 제51조) ○ 상임이사 및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재무장관이 임명(동법 제23조) ○ 직원의 보수·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를 재무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대외공개(동법 제31조)
독일	○ 이사회 구성원의 급여·연금 등 계약시 연방정부 승인 (Bundesbank Act 섹션7) ○ 연방은행 직원은 연방공무원 등으로 구성 → 연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 일반규정 적용(동법 섹션31) ○ 예산·지출·투자계획 등을 재무부 및 감사원에 제출(동법 섹션 26)

국가	전제장치
호주	○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재무부장관, 재무부가 임명하는 6명으로 구성(총 9명) → 총재 및 부총재도 재무부가 임명(Reserve Bank Act 섹션14) ○ 중앙은행 이사회 위원의 보수를 보수재판소(Remuneration Tribunal, 공직자 보수를 결정하는 독립기구)가 결정(동법 섹션 15)
스웨덴	○ 중앙은행은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관리를 추구해야 함(The Sverige Riksbank Act 제1장 섹션7) ○ 이사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감사원에 알려야 함(동법 제8장 섹션1)

둘째, 한국은행 직원의 평균보수가 민간의 비교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은 있으나, 2023년 기준 한국은행 신입직원의 보수는 비교산업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4년 한국은행 임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2.5% 인상률이 적용되었음.

또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복지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¹⁷⁾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급여 및 복지 수준과 인력유출의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움.

17) 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중(中): “사비유학을 최장 4년으로 허용하고 있고, 학술연수 비용도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이와 같은 혜택을 입은 직원이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환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최근 5년간 임원 평균보수¹⁾

(천 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2019	308,155	322,758	307,445	343,452
2020	310,437	326,680	311,189	347,625
2021	312,130	357,795	318,415	355,691
2022	320,423	309,515	294,568	350,674
2023	324,900	313,181	298,062	333,262

주: 1) 상임임원 평균보수

자료: ALIO,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천 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2019	99,064	109,888	102,055	104,116
2020	100,615	111,999	104,514	107,125
2021	100,342	113,703	105,231	107,722
2022	103,312	112,890	106,157	108,849
2023	107,434	112,999	107,862	108,606

자료: ALIO,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신입직원 보수

(천 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2019	46,568	51,417	44,879	50,457
2020	48,997	50,117	44,816	51,807
2021	49,584	50,521	45,289	52,467
2022	51,764	51,305	45,709	52,467
2023	53,669	51,636	47,892	53,339

자료: ALIO, 한국은행

셋째, 중앙은행의 독립성 지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급여성 경비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이 곧바로 통화 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님. 가령 GMT-Index¹⁸⁾에서는

18) 연구자 이름의 첫 문자를 따서 GMT-Index라고 불림, V. Grilli V, D. Masciandaro, G.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독립성 측면에서 지수를 산출하는데, 중앙은행의 예산 절차에 대한 정부의 관여 여부는 항목으로 넣고 있지 않음.¹⁹⁾

기획재정부는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은 한국은행 예산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예산을 통제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외부의 통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Tabellini, "Political and Monetary Institutions and Public Financial Policies in the Industrial Countries", Economic Policy, Vol.13, 1991

19) 김상원, "체제전환기 국가의 중앙은행 독립성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2010

- GMT-Index의 정치적 독립성 평가 기준: ①중앙은행의 총재 임명의 정부 간섭 여부, ②중앙은행 총재 임기의 5년 이상 여부, ③중앙은행 이사회의 이사 임명의 정부 개입 여부, ④중앙은행 이사회의 이사 임기의 5년 이상 여부, ⑤중앙은행의 이사회에 정부 대표 의무적 존재 여부, ⑥금융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 ⑦중앙은행법에 물가안정추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⑧정부와 갈등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의 위치를 강화하는 입법규정 여부
- GMT-Index의 경제적 독립성 평가 기준: ①정부에 대한 신용제공 절차의 강도, ②정부에 신용을 제공할 경우 시장의 이율 적용 여부, ③정부에 대한 신용제공의 기한 설정 여부, ④정부에 대한 신용제공의 제한 여부, ⑤중앙은행이 정부부채 탕감을 위한 첫 번째 조달자인지 여부, ⑥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유무, ⑦중앙은행의 상업은행 및 금융섹터 감독 권한 유무, 이 권리를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하는지 여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8조(예산·결산) ① 한국은행의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확정한다</u> .	제98조(예산·결산) ① ----- ----- ----- <u>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u> <u>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u> <u>에 제출하여야 한다</u> .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u>급여성 경비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u>위원</u> <u>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서</u>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